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안철수 · 조은희
이현승 · 신성범 · 김 건
강명구 · 김용태 · 조승환
박수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(이하 ‘인구감소지역 등’)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 또한,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·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.

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,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율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·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2조제12호 등).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 중 “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생산가능인구의 수, 인구감소율, 출생률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의2 중 “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”을 “생산가능인구의 수, 인구감소율, 출생률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”로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인구감소지역등 지정·변경)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·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)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<u>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지역을 말한다.	1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산가능인구의 수, 인구감소율, 출생률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</u> -----.
12의2. “인구감소관심지역”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	12의2. ----- ----- -----

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)·군·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3. ~ 18. (생략)

<신 설>

-----생산가능인
구의 수, 인구감소율, 출생률,
인구감소의 지속성, 인구의
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

-----지방시대위원회
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정
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
-----.

13. ~ 18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인구감소지역등 지정
· 변경)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
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·
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
다.